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5 - 1호

2025년 경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상시공고

경인지방우정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상시공고 안내>

이 공고는 상시채용을 위한 상시공고입니다.
상시공고는 시험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원서접수를 받아 응시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추후 시험일정이 확정되면 <본공고>가 게재됩니다.
상시공고 기간에 원서를 접수한 자는 본공고에 원서접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공고 게재 시 안내에 따라 경력 등 관련 서류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 상시공고 기간: **2025년 1월 2일(목) ~ 2025년 6월 30일(월)**
- 원서접수: 상시공고 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채용인원 및 시험일정: 별도 본공고를 통해 안내

1 선발예정 직위

직급(직종)	근무예정기관	업무내용
우정9급(집배)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5국) [시흥, 용인, 화성, 이천, 경기광주 우체국]**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업무**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응시원서에 반드시 응시우체국을 기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9.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2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통합인사지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 응시자격 및 조건

가. 공통사항 ※ 본공고 상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 「붙임 1」 참조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국 적: 대한민국(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 학 력: 제한 없음
- 지역제한: 공고일 현재 거주지 제한은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 본공고 상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아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 우대요건 ※ 본공고 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역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응시자격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전체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정의)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단, 우체국소포원·특수지 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20년 이전 경력은 우정직(집배)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

  ※ 근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기준

★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퀵서비스, 대형마트 주문·배송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라. 가산요건 ※ 본공고 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적극적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

★ 가산요건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가산점

ㅇ 등급별 가산점 부여: 고급(1, 2급) 5점, 중급(3, 4급) 4점, 초급(5, 6급) 3점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2.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5% 또는 3%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만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

②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참고사항>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선발단위에만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에 확인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별지서식 제2호」이력서 4. 가점요건란에 가점비율 등을 기입 (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요건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4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구분	상시공고 기간
원서접수	**2025. 1. 2.(목) ~ 6. 30.(월)** **(본공고 게재 시 추가 원서접수 기간 부여)**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본공고를 통해 추후 안내**

6 응시원서 접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상시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2.(목) ~ 6. 30.(월)
- 접 수 처: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
  (우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익일특급 등기우편)**
  ※ 방문 접수 가능 시간: 09:00 ~ 18:00(12:00~13:00 접수불가)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우정9급(집배) 경력경쟁채용(상시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나. 유의사항

- **응시자격 취득예정자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 접수 시, 응시 자격 중 하나의 자격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면허증(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시험(면접)일에 미충족 자격 취득 증명 서류 제출(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다른 선발단위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분야의 **근무예정지와 구분모집을 정확히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7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붙임 2」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ㅇ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ㅇ 별지서식 제4호
	운전경력증명서(원본, 전체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초본(원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내역을 표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ㅇ 별지서식 제6호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ㅇ 별지서식 제5호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사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상시공고 기간에 본인이 원서를 접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경력 등을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추후 본공고가 게재되면, **본공고를 기준으로 관련 경력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 해당 상시공고 기간에 원서를 접수한 자는 추후 상시공고 기간 내 게시되는 **동일한 내용의 본공고에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병역 확인 불가,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안내사항

  -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사실증명 → (1번)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2번)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8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또는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일평균 700여통 이상(최번기 73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이륜자동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 ~ 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 원서접수 시 기재 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이메일(hikibiki1@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달 이내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31-8014-3242, 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문은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postman.koreapost.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5국) [시흥, 용인, 화성, 이천, 경기광주 우체국]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업무**	**우정9급(집배)**

주요업무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 우편 차량, 원동기장치 운전 - 관할 지역 우편물 구분·수집·배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필요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무역량)** 안전의식 실천능력, 성실한 업무처리능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고객(민원)응대능력
필요지식	○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집배관련 시스템,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자격요건 – 관련분야	○ 관련분야: 우편물 배달·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ㅇ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응시자격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無음주운전 경력: ㅇ 운전경력증명서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경력(전체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ㅇ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유리한 자격 1개만 가능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급 이상 인증서 보유시 3~5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부여 ○ 의사상자 등 대상자 3~5점 부여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0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0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병역 확인 불가,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를 아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A4 4매 이내로 작성
5. 운전경력증명서: 필수서류	ㅇ **정부24(www.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급** ㅇ **공고일 이후 발급** ㅇ 면허취득일 이후 운전경력 **전체현황**을 확인 가능토록 발급 - **「운전면허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 및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6. 운전면허증(사본): 필수서류	

구 분	내 용
7. 주민등록초본: 필수서류	○ **정부24(www.go.kr)에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하여 발급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내역)하여 발급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별지서식 제5호)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 본공고 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우대요건을 판단함 ○ 사업장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p8~9 확인)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9.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3급 이상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1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12.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성명	모집단위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해당란 체크)
※ 미기재		(우체국	우정9급 (집배)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	필수	□
2. 이력서	필수	□
3. 자기소개서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5. 운전경력증명서(원본) ※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
6. 운전면허증(사본)	필수	□
7. 주민등록초본(원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
8.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해당자 한	□
9.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사본)	해당자 한	□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해당자 한	□
1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 한	□
12.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해당자 한	□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경인지방우정청 주관 2025년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응시번호	※ 미기재	성 명	(한글)	
채용예정관서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천 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2025년 우정9급(집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응시번호	※ 미기재	성 명	(한글)
채용예정관서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공고한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③ 채용예정관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우체국을 기재

④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⑦ 정부수입인지: 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미기재	모집구분	일반	모집단위 (채용예정기관)	

2.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운전 면허			

3. 우대요건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택배 업무)				

	자격증명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4. 가점요건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등급	인증번호		시험일자	시행기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보훈번호	등록일자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비율	의사상자 번호	등록일자	의사상자 등과의 관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 본인이 직접 자필 또는 워드작성가능하며 작성자는 자필로 이름과 서명 기재함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응시번호	※ 미기재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지원동기 및 귀하가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14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5. . . 작성자 (인/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우정9급(집배)	응시번호	※ 미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로 하고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등

※ 14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5. . . 작성자 (인/서명)

<별지서식 제5호>

경 력 증 명 서

<table>
<tr><td colspan="7">제 2025 -　　호</td></tr>
<tr><td rowspan="3">인 적
사 항</td><td rowspan="2">성명</td><td>한 글</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주민등록상)</td><td>.　.　.</td></tr>
<tr><td>한 자</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7">경 력
사 항</td><td colspan="2">근 무 기 간</td><td rowspan="2">근무부서</td><td colspan="2" rowspan="2">담당업무</td></tr>
<tr><td>부터</td><td>까지</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구체적으로 기재</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근무연한</td><td>년　　월</td><td colspan="2">최종직위 또는 직급</td><td colspan="2"></td></tr>
<tr><td>퇴직사유</td><td colspan="6"></td></tr>
<tr><td>용　　도</td><td colspan="6">우정9급(집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출용</td></tr>
<tr><td>회사소재지</td><td colspan="6"></td></tr>
</table>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또는 회사명(관인 또는 회사대표자인)

작성담당부서	
작성책임자	
작성담당자	
연락처	

※ 기재된 사항이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있을 경우 기관발급용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